



정다운 이웃!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문서  
종류

# 공 고 문

문서  
번호

제20-12-15호

게시일

2020. 12. 30.

게시  
기간

~2021.01.08.까지

제 목

## 저수조(물탱크) 청소 용역 계약서 공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의거하여 2021년도 저수조(물탱크)청소 용역 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서를 공고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계약명: 저수조(물탱크) 청소 용역 계약

1) 업 체 명: 서진방역환경

2) 주 소: 진주시 진양호로 97번길 20

3) 대 표 자: 김 장 식

4) 연 락 처: 055-743-8342

5) 계약일자: 2020. 12. 30.

6) 계약기간: 2021. 04. 01 ~ 2022. 03. 31.(1년)

7) 금 액: 년/1,060,000원(부가세 별도),

년 2회 회당/530,000(부가세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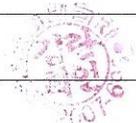
8) 기타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2] 제9호에 의거하여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재계약 의결하여 수의계약 함. 끝.

-붙임: 계약서 1부.

게시주체

진사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확 인



본 게시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물탱크) 청소 용역 계약서

사천진사주공아파트 관리주체(이하 “갑” 이라 한다) 와 서진방역환경(용역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 이라한다)는 경남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60 진사주공아파트의 저수조(물탱크)청소 용역에 대하여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저수조시설명 : 진사주공아파트

계약기간 : 1년연2회)↔(2021년4월1일부터~2022년3월31일까지(1년)

단지규모 : 8개동630세대

## 제 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 약정한 저수조(물탱크)청소 용역 업무를 정해진 절차 및 관계법령에 따라 “갑” 이 실시하여야할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을”이 대행함에 있다.

## 제 2조(소득의 내용)

법정 저수조. 청소 및 살균작업

## 제 3조(청소의 범위 등)

- ① 지하저수조 용량: 637톤
- ② 청소횟수 : 상반기, 하반기 연2회실시
- ③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4항에 의거한 수질검사를 년 2회 시행(수질검사 의뢰비용은 “을” 부담)하고 매 검사 결과(시험성적서, 사진 등 포함)를 관리소장에게 제출 한다. (단, 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 “을” 은 “갑” 에게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합격 시까지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청소작업은 한 구획씩 실시하여 입주민의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을” 은 청소를 위한 밸브 조정 및 펌프 정지부터 저수조에 물을 채운후 맑은 물을 세대에 정상 급수하고 펌프와 기기가 정상 작동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준수의무) “을” 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수도법 등 관계되는 법령(이하 “관계법령” 이라 한다) 및 “갑” 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저수조(물탱크)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재료, 장비의 부담 및 시설 사용의 승인) ① 저수조(물탱크) 청소 용역에 필요한 재료 및 장비는 해당 법령의 규정 및 별도의 작업 계획에 따르며 “을” 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을”이 계약에서 약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기, 용수 및 시설 등을 제공하고 그 사용을 승인한다.
- ③ “을”은 제2항에 의거하여 제공받은 전기, 용수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이 계약상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 제6조(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보수 등 책임)

- ① “을”은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저수조 청소 작업 기간중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고자 할 때는 그 직무대행자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을”은 저수조 청소와 관련하여 작업전 단지 내 시설물 및 입주자등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하며 작업 부주의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과 “갑”의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또한 작업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전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준공)

- ① “을”은 청소완료 후 저수조에 물을 채우고 감독원 입회하에 저수조 내부와 말단 급수전의 수질에 대해 “저수조 위생 점검 기준”에 따라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청소완료와 동시에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4항에 의거 년2회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시험성적서, 사진 등 포함)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시험 성적서는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에서 발부받아야 한다.
- ③ “을”은 청소완료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청소 전, 청소 중 및 청소 후 세부 비교 사진
  - ㉡ 감독이 지정하는 곳의 사진(벽면, 천장, 바닥면, 녹 발생부위 등)
  - ㉢ 청소 후 보이지 않는 부분 또는 중요부분의 사진

제8조(대금지급) “갑”은 저수조(물탱크)청소 작업 준공 후 30일 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필증교부) “을”은 저수조 청소 완료 후 즉시 저수조 청소필증을 “갑”에게 교부하고 관계 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금액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은 일백육만원(1,060,000원)/년-부가세 별도, 오십삼만원(530,000)/회당-부가세 별도, 수질검사비 2회 포함으로 하며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한다.

제11조(지체상금)

“을”은 청소기간이 지연되거나 청소 완료검사의 불합격 시 단지별 계약금의 2.5/1000을 지체일수로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관리소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단, 천재지변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관리소장이 연기를 승인 하거나 또는 관리소 사정에 의하여 연기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

-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 5. “을”이 본 계약을 제3자에게 하도급한 때
-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갑” 또는 “을”의 계약해지 통지 없이도 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

제13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을”이 제12조에 의거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 된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갑”과 “을”은 본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2부 작성 하여 각1부를 보관한다.

계약체결일: 2020년 / 2월 30일

“관리주체” 진사주공아파트 관리회사 남부건업(주) 대표이사 하범중  
주 소 :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60번길 21-1.401호  
용호동,원빌딩  
전화번호 : 055-266-8801

“위 대리인” 진사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김 란 희  
주 소 : 경남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60  
전화번호 : 055-852-5785

“용역사업자” 서진방역환경 대표자 : 김 장 식  
주 소 : 진주시 진양호로 97번길 20  
전화번호 : 055-743-8342

